

제315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인 제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구로구 제2선거구 김인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서, 반려동물 양
육가구의 수는 전체가구의 15%(통계청, 2020년), 25.9%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2020년),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대수는 852,304
세대이고, 반려동물의 수는 1,120,930마리로 추정됩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나날이 늘어나는 만큼 세상을 떠나는 반려동물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반려동물
사체를 임의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현재
서울 시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설치를 위한 노력 및 자치구 등에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적인 동물사체 처리, 불법 시설 이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묘시설 부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